



## 서울남부지방법원

### 제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20나64345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소23064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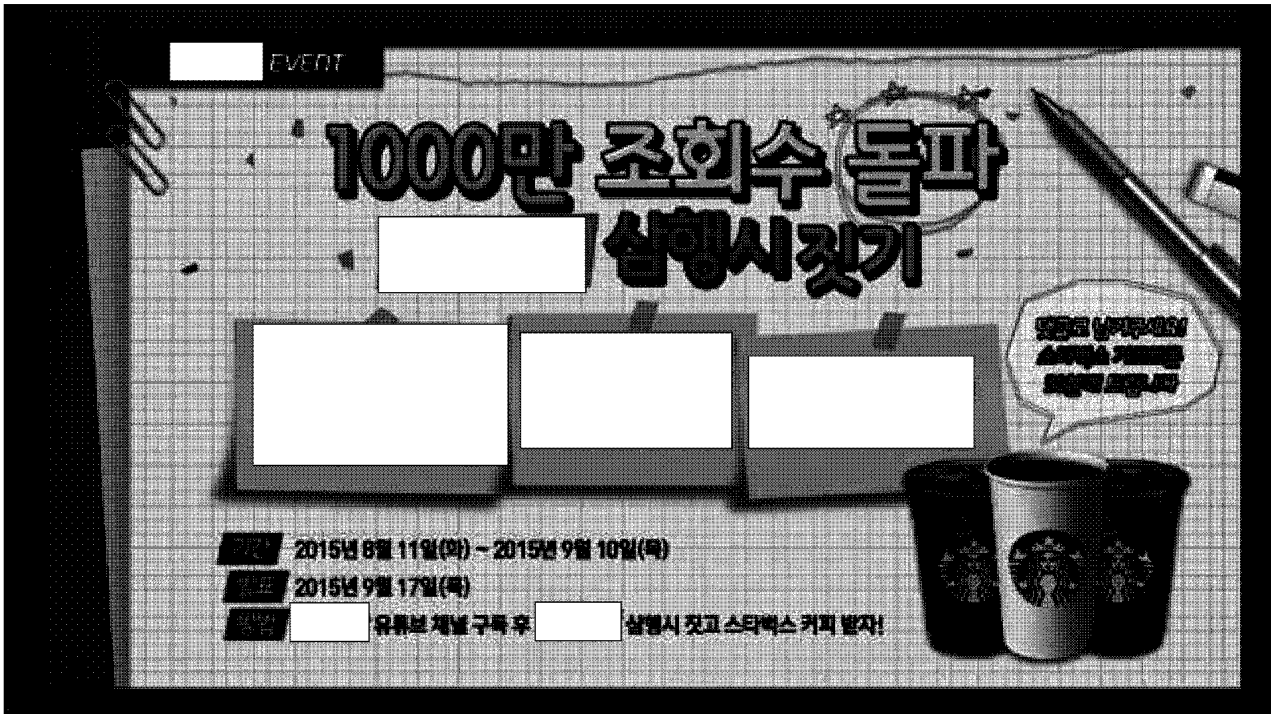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판매 및 유통업, 음악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D'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가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2015. 8.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아래와 같은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E', 'F'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면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2018. 8.경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이 사건 서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2019. 초경 삭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



호)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참조). 따라서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이 원고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사업 활동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서체가 이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2) 원고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기본 사용료가 242만 원,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352만 원(= 242만 원 +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G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H' 폰트 소프트웨어(253타입 605종) 또는 'I' 폰트 소프트웨어(271타입 645종) 등 서체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료가 242만 원,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도 위 수백 종의 서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침해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2015. 8.경 최초 게시된 후 2015. 9. 17.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의미하게 이용되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2019. 초경까지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위 및 태양, 이후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최초 게시된 2015. 8.경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19. 12. 19.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가해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15. 8.경 저작권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5. 8.경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